

- 2022년 제2회 영주시의회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 제2회 영주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9일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 직무 내용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정책 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2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라.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임용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p>※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 지정된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행정, 시설(건축, 토목), 농업, 법무, 입법정책, 감사,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p>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

※ 관련분야 최종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조건 : 주 40시간 근무(09:00 ~ 18:00 / 1일 8시간, 주 5일)

나.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의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7급(상당)	63,693천원	45,237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활용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11.(수) ~ 5. 13.(금)

○ 접수처

- 방문접수 : 영주시의회 총무팀(본관 2층) / ☎ 054-639-7231
- 우편접수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영주시의회 총무팀
(우편번호 3607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정책지원관 응시원서" 표기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공통사항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2. 5. 19.(목) 예정	2022. 5. 24.(화) ~ 5. 26.(목) 중 예정	영주시의회 서관 2층 소회의실	추후 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eongju.go.kr) 「공지사항」란에 공고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eongju.go.kr) 「공지사항」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영주시 수입증지)

- 판매장소 : 영주시청 1층 새마을봉사과 또는 영주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4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⑩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 명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⑪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나. 개별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7.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마.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영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eongju.go.kr) 「공지사항」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총무팀(☎ 054-639-72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참 고

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사무국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조사보고의 처리·질의응답, 의회규칙, 회의규칙) ○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성실성)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 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분석력, 협동정신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예산안 등 입법지원에 따른 관계법령 및 규정관련 지식 ○ 사회 전반적 현상에 대한 검토와 높은 이해도 ○ 지방의회와 의사진행 등에 대한 지식 ○ 영주시 예산 및 결산 자료에 대한 지식 ○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관 련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 지정된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행정, 시설(건축, 토목), 농업, 법무, 입법정책, 감사,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